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10.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2호로 2022년 10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준용규정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9. 8. ~ 9. 28.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한 것이며,
-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2021. 8. 26.)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